

제2968호  
2022.12.28.

발행인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길성  
편집인 : 홍보전산과장도순심  
전화 : 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자치법규

선	기관 의 장
람	

# 구 보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22-920호 :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  
 제2022-928호 : 서울특별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24  
 제2022-929호 :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1  
 제2022-930호 :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34

● 고 시

제2022-125호 : 지적기준점표지 폐기 고시 ..... 42  
 제2022-126호 : 2023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 44  
 제2022-129호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 45  
 제2022-130호 :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 46  
 제2022-131호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 47  
 제2022-132호 : 서울역-서대문1·2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 57

● 공 고

제2022-922호 : 퇴직정보보험료(건강 및 고용보험료) 환수 고지서 발송에 따른 공시총달 ..... 59  
 제2022-931호 :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 모집 공고 ..... 60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	--	--	--	--	--	--	--	--	--	--	--	--	--	--	--	--	--	--	--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920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22.4.26.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 (제2조제4항, 제8조제1항, 제9조)
  - 주민투표법 개정('16.5.29.)으로 법에서 더 이상 재외국민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례의 관련 내용 삭제
- 나.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삭제 (제3조)
  - 법에서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18세로 규정하고 있어(개정법 제5조제1항) 조례에서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기존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 규정 삭제
- 다.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 (제4조)
  - 법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던 주민투표 대상을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법으로 규정함에 따라(개정법 제7조) 조례의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

라.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 법에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요청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개정법 제10조, 제12조) 조례에 전자청구인서 명부 관련 내용을 추가

마. 통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 작성 내용 추가 (제8조제2항)

- 법에서 주민투표실시구역 설정 범위를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관할구역 중 일부’로 개정함에 따라(개정법 제16조제1항 단서), 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통반 단위로 실시할 경우 청구인서명부 또한 통반 단위로 작성하는 내용을 추가

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 (제12조~제16조)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개정법 제12조의2) 기존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 및 규정사항에 따라 조를 분리하여 규정
  - ▶심의회 운영 서식 관련 규정(의안표지, 회의록)은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삭제
  - ▶심의회 위촉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관련 규정은 주민투표조례에 두지 않아도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므로 삭제

사. 성별 기재사항 삭제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2항)

- '17년에 주민투표조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규정을 정비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과 성별을 병 기하여 규정하였으나, 성별 또한 필수정보가 아니므로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동정부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예관동)), 문의전화:3396-4568, FAX:3396-8612, 메일:myonga798@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3조 중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을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로, “사람은”을 “외국인은”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생년월일(성별)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청구인서명부의 제출”)을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성별)”을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청구인서명부”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생년월일(성별)”을 “생년월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중구 소속 공무원
2.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중구의회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심의회 운영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한다.

-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심의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 ④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총전의 제16조) 중 “제13조제2항”을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0조 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실시구역 변경	[ ] 신청 [ ] 필요없음			
	<변경 사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6호서식]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div>			
※ 첨부서류 : 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별지 제7호서식]

이의신청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div>			
※ 첨부서류 : 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2조(구의 책무) ① ~ ③ (생략)</p> <p>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제2조(구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u>외국인</u> ----- ----- -----.</p>
<p>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u>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다.</u></p>	<p>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u>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u></p> <p>----- <u>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u></p>
<p>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u></p> <p>2. <u>자치구 및 동의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u></p> <p>3. <u>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u></p>	<p>&lt;삭 제&gt;</p>

현 행	개 정
<p>4. <u>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구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u></p> <p>5. <u>그 밖에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u></p> <p>6. <u>그 밖에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u></p>	
<p>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u>생년월일(성별)·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u>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lt;단서 신설&gt;</p> <p>&lt;신 설&gt; &lt;신 설&gt; &lt;신 설&gt; &lt;신 설&gt;</p> <p>② <u>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lt;단서 신설&gt;</u></p>	<p>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u>다음 각 호의 사항을</u> ----- ----- <u>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u></p> <p>1. <u>성명</u></p> <p>2. <u>생년월일</u></p> <p>3. <u>주소 또는 체류지</u></p> <p>4. <u>서명 연월일</u></p> <p>② ----- <u>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u></p>

현행	개정
<p>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u>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성별)</u>,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p>	<p>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 ----- <u>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u>, ----- -----.</p>
<p>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u>청구인서명부</u>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p> <p>② 구청장은 <u>생년월일(성별)</u>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p> <p>③ ~ ④ (생략)</p>	<p>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 ----- <u>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u> ----- -----.</p> <p>② ----- <u>생년월일</u>을 ----- -----.</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u>심의회</u>”라 한다)를 둔다.</p> <p>1. <u>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효성 확인</u></p> <p>2. <u>이의신청의 심사·결정</u></p> <p>3. <u>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u></p>	<p>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u>심의회</u>”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u>중구 소속 공무원</u></p> <p>2. <u>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중구의회 의원</u></p> <p>3. <u>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분야의</u></p>

현행	개정
<p>4.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p> <p>② <u>심의회</u>의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 심의회에서 호선한다.</p> <p>③ <u>심의회</u>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중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주민투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p> <p>1. <u>중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u></p> <p>2. <u>중구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중구의회 의원</u></p> <p>3. <u>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u></p> <p>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p> <p>⑤ <u>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u></p> <p>⑥ <u>심의회</u>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p> <p>⑦ <u>심의회</u>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⑧ <u>심의회</u>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p>	<p><u>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p> <p>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p>



현 행	개 정
<p>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과장이, 서기는 담당주사가 된다.</p> <p>⑨ 심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 8호서식에 의안과 참고사항을 첨부한다.</p> <p>⑩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별지 제 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별지 제10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한다.</p> <p>⑪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p> <p>⑫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⑬ 이 조례에 따른 사항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p>	
<신 설>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법 제12조의2 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현 행	개 정
	<p>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p> <p>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p>
<신 설>	제15조(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신 설>	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 제15조 (생략)	제17조 ~ 제19조 (현행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와 같음)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구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제20조(공표방법 등) ----- -----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현행	개정																																																												
<p><b>[별지 제1호서식]</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th> </tr> <tr> <td>청구인 대표자</td> <td>성명</td> <td>주민등록번호</td> <td></td> </tr> <tr> <td>주소</td> <td colspan="3">(전화번호: )</td> </tr> <tr> <td>청구의 대상 및 취지</td> <td colspan="3"></td> </tr> <tr> <td>청구 이유</td> <td colspan="3"></td> </tr> <tr> <td colspan="4">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td> </tr> <tr> <td colspan="4">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제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제외국인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td> </tr> </table>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제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제외국인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p><b>[별지 제1호서식]</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th> </tr> <tr> <td>청구인 대표자</td> <td>성명</td> <td>생년월일</td> <td></td> </tr> <tr> <td>주소</td> <td colspan="3">(전화번호: )</td> </tr> <tr> <td>청구의 대상 및 취지</td> <td colspan="3"></td> </tr> <tr> <td>청구 이유</td> <td colspan="3"></td> </tr> <tr> <td>주민투표실시구역</td> <td colspan="3"> <input type="checkbox"/> [신장] <input type="checkbox"/> 필요없음                      &lt;변경 사유&gt;                 </td> </tr> <tr> <td colspan="4">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td> </tr> <tr> <td colspan="4">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별경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td> </tr> </table>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실시구역	<input type="checkbox"/> [신장] <input type="checkbox"/> 필요없음 <변경 사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별경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제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제외국인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실시구역	<input type="checkbox"/> [신장] <input type="checkbox"/> 필요없음 <변경 사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별경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p><b>[별지 제2호서식]</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 대표자 증명서</th> </tr> <tr> <td>성명</td> <td></td> <td>주민등록번호</td> <td></td> </tr> <tr> <td>주소</td> <td colspan="3">(전화번호: )</td> </tr> <tr> <td>주민투표 청구요지</td> <td colspan="3"></td> </tr> <tr> <td>서명요청 기간</td> <td colspan="3">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td> </tr> <tr> <td colspan="4">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                 </td> </tr> <tr> <td colspan="4">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제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제외국인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자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td> </tr> </table>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제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제외국인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자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p><b>[별지 제2호서식]</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 대표자 증명서</th> </tr> <tr> <td>성명</td> <td></td> <td>생년월일</td> <td></td> </tr> <tr> <td>주소</td> <td colspan="3">(전화번호: )</td> </tr> <tr> <td>주민투표 청구요지</td> <td colspan="3"></td> </tr> <tr> <td>서명요청 기간</td> <td colspan="3">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td> </tr> <tr> <td colspan="4">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                 </td> </tr> <tr> <td colspan="4">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자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td> </tr> </table>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자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제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제외국인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자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자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현행	개정																																																																																										
<p><b>[별지 제3호서식]</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th> </tr> <tr> <td>주민투표 청구요지</td> <td colspan="3"></td> </tr> <tr> <td>청구인대표자</td> <td>성명</td> <td>주민등록번호</td> <td></td> </tr> <tr> <td>주소</td> <td colspan="3">(전화번호: )</td> </tr> <tr> <td rowspan="4">수임자</td> <td>성명</td> <td>(서명 또는 날인)</td> <td>주민등록번호</td> </tr> <tr> <td>주소</td> <td colspan="2">(전화번호: )</td> </tr> <tr> <td>기간</td> <td colspan="2">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td> </tr> <tr> <td>성명</td> <td>(서명 또는 날인)</td> <td>주민등록번호</td> </tr> <tr> <td>주소</td> <td colspan="3">(전화번호: )</td> </tr> <tr> <td>기간</td> <td colspan="3">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td> </tr> <tr> <td colspan="4">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td> </tr> <tr> <td colspan="4">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자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제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제외국인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td> </tr> </table>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자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제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제외국인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p><b>[별지 제3호서식]</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th> </tr> <tr> <td>주민투표 청구요지</td> <td colspan="3"></td> </tr> <tr> <td>청구인대표자</td> <td>성명</td> <td>생년월일</td> <td></td> </tr> <tr> <td>주소</td> <td colspan="3">(전화번호: )</td> </tr> <tr> <td rowspan="4">수임자</td> <td>성명</td> <td>(서명 또는 날인)</td> <td>생년월일</td> </tr> <tr> <td>주소</td> <td colspan="2">(전화번호: )</td> </tr> <tr> <td>기간</td> <td colspan="2">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td> </tr> <tr> <td>성명</td> <td>(서명 또는 날인)</td> <td>생년월일</td> </tr> <tr> <td>주소</td> <td colspan="3">(전화번호: )</td> </tr> <tr> <td>기간</td> <td colspan="3">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td> </tr> <tr> <td colspan="4">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td> </tr> <tr> <td colspan="4">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자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td> </tr> </table>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자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자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제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제외국인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자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p><b>[별지 제4호서식]</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th> </tr> <tr> <td>주민투표 청구요지</td> <td colspan="3"></td> </tr> <tr> <td>청구인대표자</td> <td>성명</td> <td>주민등록번호</td> <td></td> </tr> <tr> <td>주소</td> <td colspan="3">(전화번호: )</td> </tr> <tr> <td rowspan="4">수임자</td> <td>성명</td> <td>(서명 또는 날인)</td> <td>주민등록번호</td> </tr> <tr> <td>주소</td> <td colspan="2">(전화번호: )</td> </tr> <tr> <td>기간</td> <td colspan="2">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td> </tr> <tr> <td>성명</td> <td>(서명 또는 날인)</td> <td>주민등록번호</td> </tr> <tr> <td>주소</td> <td colspan="3">(전화번호: )</td> </tr> <tr> <td>기간</td> <td colspan="3">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td> </tr> <tr> <td colspan="4">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                 </td> </tr> <tr> <td colspan="4">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자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제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제외국인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td> </tr> </table>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자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제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제외국인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p><b>[별지 제4호서식]</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th> </tr> <tr> <td>주민투표 청구요지</td> <td colspan="3"></td> </tr> <tr> <td>청구인대표자</td> <td>성명</td> <td>생년월일</td> <td></td> </tr> <tr> <td>주소</td> <td colspan="3">(전화번호: )</td> </tr> <tr> <td rowspan="4">수임자</td> <td>성명</td> <td>(서명 또는 날인)</td> <td>생년월일</td> </tr> <tr> <td>주소</td> <td colspan="2">(전화번호: )</td> </tr> <tr> <td>기간</td> <td colspan="2">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td> </tr> <tr> <td>성명</td> <td>(서명 또는 날인)</td> <td>생년월일</td> </tr> <tr> <td>주소</td> <td colspan="3">(전화번호: )</td> </tr> <tr> <td>기간</td> <td colspan="3">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td> </tr> <tr> <td colspan="4">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                 </td> </tr> <tr> <td colspan="4">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자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td> </tr> </table>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자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자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제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제외국인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자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현 행	개 정																																										
<p><b>[별지 제5호서식]</b></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 ) 주민투표의 청구</p> <h3 style="text-align: center;">청 구 인 서 명 부</h3> <p>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중구 및 ○동(○책중 ○권)</p> <p style="text-align: right;">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입 자 (서명 또는 날인)</p> <p><b>※ 작성요령</b>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입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입자를 기재한다.  - 서명을 요청한 수입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입자를 모두 기재한다.</p> </div> <p style="text-align: center;"><b>청 구 인 서 명 부</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번호</th> <th>성 명</th> <th>주민등록 번호</th> <th>주 소</th> <th>서 명 또는 날 인</th> <th>서명 일자</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body> </table> <p><b>※ 작성요령</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한다.</li> <li>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li> <li>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한다.</li> <li>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한다.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 외국인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한다.</li> </ol>	번호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p><b>[별지 제5호서식]</b></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 ) 주민투표의 청구</p> <h3 style="text-align: center;">청 구 인 서 명 부</h3> <p>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중구 ○ 동(○책중 ○권)</p> <p style="text-align: right;">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입 자 (서명 또는 날인)</p> <p><b>※ 작성요령</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입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입자를 기재한다.</li> <li>서명을 요청한 수입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입자를 모두 기재한다.</li> <li>중구 ○○동(○책중 ○권) 란에는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반으로 작성한다.</li> </ol> <p style="text-align: center;"><b>청 구 인 서 명 부</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번호</th> <th>성 명</th> <th>생년월일</th> <th>주 소</th> <th>서 명 또는 날 인</th> <th>서명 일자</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body> </table> <p><b>※ 작성요령</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li> </ol> </div>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번호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현 행	개 정																																		
<p>5.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한다.</p> <p>6.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성명을 기재</li> <li>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li> <li>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li> <li>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li> </ol>																																		
<p><b>[별지 제6호서식]</b></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h3 style="text-align: center;">주 민 투 표 청 구 서</h3>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2">청구인 대표자</td> <td>성명</td> <td>주민등록번호</td> </tr> <tr> <td>주소</td> <td>(전화번호 : )</td> </tr> <tr> <td colspan="3">청구의 대상 및 취지</td> </tr> <tr> <td colspan="3">청구 이유</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td> </tr> <tr> <td colspan="3">           ※ 첨부서류: 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td> </tr> </table> </div>	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p><b>[별지 제6호서식]</b></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h3 style="text-align: center;">주 민 투 표 청 구 서</h3>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2">청구인 대표자</td> <td>성명</td> <td>생년월일</td> </tr> <tr> <td>주소</td> <td>(전화번호 : )</td> </tr> <tr> <td colspan="3">청구의 대상 및 취지</td> </tr> <tr> <td colspan="3">청구 이유</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td> </tr> <tr> <td colspan="3">           ※ 첨부서류: 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td> </tr> </table> </div>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현 행	개 정																																																																								
<p><b>[별지 제7호서식]</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이 의 신 청 서</th> </tr> <tr> <td style="width: 15%;">신 청 인</td> <td style="width: 15%;">성명</td> <td style="width: 15%;">주민등록번호</td> <td style="width: 55%;"></td> </tr> <tr> <td></td> <td>주소</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right;">(전화번호 : )</td> </tr> <tr> <td>대 상</td> <td colspan="3"></td> </tr> <tr> <td>신 청 위 지</td> <td colspan="3"></td> </tr> <tr> <td>신 청 사 유</td> <td colspan="3"></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td> </tr> <tr> <td colspan="4">                     ※ 첨부서류 : 증명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인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제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제외국인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용 기재                      4.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위치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td> </tr> </table>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대 상				신 청 위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증명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인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제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제외국인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용 기재 4.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위치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p><b>[별지 제7호서식]</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이 의 신 청 서</th> </tr> <tr> <td style="width: 15%;">신 청 인</td> <td style="width: 15%;">성명</td> <td style="width: 15%;">생년월일</td> <td style="width: 55%;"></td> </tr> <tr> <td></td> <td>주소</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right;">(전화번호 : )</td> </tr> <tr> <td>대 상</td> <td colspan="3"></td> </tr> <tr> <td>신 청 위 지</td> <td colspan="3"></td> </tr> <tr> <td>신 청 사 유</td> <td colspan="3"></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td> </tr> <tr> <td colspan="4">                     ※ 첨부서류 : 증명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용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위치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td> </tr> </table>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대 상				신 청 위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증명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용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위치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대 상																																																																									
신 청 위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증명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인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제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제외국인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용 기재 4.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위치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대 상																																																																									
신 청 위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증명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용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위치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p><b>[별지 제8호서식]</b>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의안의 표지</p>	<p>&lt;삭 제&gt;</p>																																																																								
<p><b>[별지 제9호서식]</b> 주민투표청구심의회 회의록</p>	<p>&lt;삭 제&gt;</p>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928호

「서울특별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릴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서울특별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1. 10. 19. 제정,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의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안 제1조)
- 나.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운영 등(안 제2조 ~ 제5조)
- 다. 고향사랑기금 조성(안 제6조)
- 라. 지정금융기관 위탁(안 제7조)
- 마.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 등(안 제8조 ~ 제2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동정부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동정부과, 전화 : 02-3396-4564, FAX : 02-3396-8612, 메일 : soh0321@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답례품

제2조(답례품의 종류) ①「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창업 및 육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물품 및 서비스
2. 서울중구사랑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구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3. 구의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장애인 단체 등 사회적 경제 주체의 생산품
4. 그 밖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운영하는 각종 서비스 상품

제3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품질,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상품화·품질관리·배송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실적 및 매출액
4.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답례품 제공 비용)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영 제5조제1항의 연간 기부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조제2항 및 법 제9조에 따른 답례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3조의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위촉하되,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 업무 관련 국장이 된다.

1. 고향사랑기부 업무 부서장
2. 지역특산품 및 기념품 선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상품의 제작 및 유통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
4.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5.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그 밖에 선정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3장 고향사랑기금

제6조(기금의 조성)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구청장은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9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3. 구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4. 고향사랑 기부금의 답례품 제공 및 그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 5.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② 구청장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각종 운영경비 및 위원회 수당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 1. 기금운용관 :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부서장
- 2. 기금출납원 :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당연직 위원 :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공무원 등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사람
  - 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전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하며,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제17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18조(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기금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 ①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관한 서류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서류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구청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2.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3. 제20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3조(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구청장은 법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선정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929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통장 임명권자를 변경하고, 통 명칭과 구역 조정권자를 변경 등으로 효율적인 통·반 관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근거조항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서 제7조제5항으로 개정(제1조)
- 통의 명칭과 구역의 지정을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개정(제3조)
-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제4조~제6조 각각 삭제(제4조~제6조)
- 업무 중 알게 된 개인정보 유출 및 이용 금지 조항 신설(제7조의2)
- 시행세칙에서 시행규칙 제정으로 개정(제12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동정부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전화 : 3396-4566, FAX : 3396-8612, E-mail : junyoomin@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 호

###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조의2제5항”을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통의 명칭과 구역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비밀유지)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나 비밀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주민 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적인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7조제5항----- ----- ----- -----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통·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통의 명칭과 구역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
제4조(통장의 임기)	<삭제>
제4조의2(반장의 임기)	<삭제>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① ~ ⑤ (생략)	<삭제>
제5조의2(통장추천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 ⑤ (생략)	<삭제>
제6조(명예반장) ① ~ ② (생략)	<삭제>
<신설>	제7조2(비밀유지)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나 비밀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 규칙으로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930호

이 시행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통·반장의 임기, 임명과 해임에 관한 규정(제2조~제4조)
- 통장 모집공고와 통장후보자 신청 세부사항 규정(제5조~제6조)
- 통장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규정(제7조~제8조)
- 통·반장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보고 규정(제9조)
- 통·반장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서식 규정(별지제1호~별지제3호)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동정부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전화 : 3396-4566, FAX : 3396-8612, E-mail : junyoomin@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장 및 반장의 임기) ①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기간 종료 후 새로운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연임할 수 있다.

② 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통장 및 반장의 임명·해임) ① 통에 통장과 반에 반장을 둔다.

② 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공개모집하고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따른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장이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사람을 발굴하여 추천한다.

1. 해당 통의 관할 구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다만, 신설 통인 경우 1년 이상 주민등록을 요하지 않음)

2.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활동적이며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③ 반장은 그 반의 관할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한다.

④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 및 반장을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1. 통장은 통 관할지역 반장은 반 관할지역 이 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2.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
3. 심신장애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5. 대통령,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및 선출직에 출마하는 특정인의 당선지지를 위한 홍보, 연락, 유인물 배부, 물품전달, 업무보조 등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경우
6.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명예반장) ① 반에는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반장은 반내 지도층 인사로서 반원의 추천에 의하여 동장이 임명한다.

제5조(통장 모집 공고) ① 통장 모집 공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시판, 해당 통 주요 통행로 2개소 이상에 공고하며, 3년의 통장 임기가 만료하여 모집할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한다.

② 공고기간은 7일 이상(토·일·공휴일 포함)으로 한다.

제6조(통장후보자 신청) 통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기간 중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통장심사위원회 구성) ① 통장은 통장심사를 위하여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동 단위별 비상설기구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동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주민자치위원장, 통장협의회장 등 해당 동 주민 중에서 덕망과 신임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종료 시 자동 해산한다.

제8조(통장심사위원회 운영) ①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다만, 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심사항목·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사표에 따라 최고 득점자를 통장으로 선정하되, 동점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단, 통장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는 평균 60점 이상일 때 임명한다.

③ 위원은 심사 중 알게 된 심사대상의 개인정보나 비밀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보고) 동장은 통장 및 반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 경우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 중구 ○○동 공고 제 - 호

# 통장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동 ○○ 통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 모집 대상 통

- 통 명: ○○동 ○○통
- 관할구역:

### □ 접수 기간:

### □ 통장신청 자격요건

- 해당 통의 관할 구역 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신설되는 통의 경우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활동적이며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 □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반명합판 사진 1매 부착)
- 자기소개서 1부 (지원동기, 경력 등)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접수 및 문의: ○○동 주민센터(☎ )

년 월 일

## 서울특별시 중구 ○○동장

[별지 제2호서식]

# 통장 후보자 신청서

본인은 \_\_\_\_\_ 동 제 \_\_\_\_\_ 통장 후보자 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동	통장
---	----

신 청 자	한글		생년월일 (연령)	- - (만 세)	사 진 6개월이내 천연색사진 (3×4cm)
	한자		성 별	남 / 여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해 당 통 전 입 일	년 월 일 ~ 현재까지 ( 년 개월) ※ 가장 최근 전입일 기준				
연 락 처	휴대폰	010 - -	자 택	02 - -	
	전자우편(E-mail)				
직 업		직 위			
위와 같이 중구 _____ 동 제 _____ 통장 후보자로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성명 : (서명)					
서울특별시 중구 _____ 동장 귀하					
※ 첨부서류 :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각 1부.					

□ 자기소개서

□ 본인소개, 지원동기, 통장 선출 시 봉사계획 등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통장 심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등 필요 사항에 대한 열람·발급에 동의하고 제출한 서류 일체를 반환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또한 통장 심사 결과 및 이후 위 기재 사항의 허위로 인하여 해임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서약자 : (서명)

서울특별시 중구 \_\_\_\_\_동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중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절차를 준수하며, 고지 후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외의 용도로는 절대 수집·이용되지 않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에 따른 중구 통장후보자 자격확인 및 심사	
수집·이용 항목	필수적 정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휴대폰·주택·전자우편), 직업, 직위, 약력(주요경력·봉사활동내역 등)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위에 설명된 이용목적에 위하여 수집·이용되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후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개인정보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는 방법으로 즉시 파기됩니다.	

2.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통장으로 임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주체에게 각종 행정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 본인은 위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	--------------------------	-----	--------------------------

※ 본인은 위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	--------------------------	-----	--------------------------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별지 제3호서식]

# 통장후보자 심사표

- 심사일시 : 20 . . .
- 심사장소 :
- 평가방법 :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
- 통장후보자 (      동 제      통 )

성명		성별	남/여	생년월일	- -	연락처	자택)
주소	도로명주소)						휴대폰)

□ 심사항목

평가 항목	세부 사항	배 점	점 수
신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내 거주기간</li> <li>• 추천내용</li> <li>• 반장 및 인근주민의 덕망과 신임도 등</li> </ul>	20	
업무수행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장 지원동기 및 목적</li> <li>• 사회경력</li> <li>• 원활한 업무수행가능 여부 등</li> </ul>	30	
행정관심도 및 참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 동정사업 참여 및 기여도</li> <li>• 직능단체 참여도 등</li> <li>• 반장 경력 유무</li> </ul>	30	
봉사자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봉사활동 참여(봉사기간, 봉사내용)</li> <li>• 표창 수상 여부 등</li> <li>• 대민봉사에 대한 긍정적 사고 등</li> </ul>	20	
<b>총 점</b>			

20 년 월 일

OOO동 통장심사위원 성명 (서명)

※ 각 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심사항목 및 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수정할 수 있음

#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2-125호

## 지적기준점표지 폐기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지적도근점 번호	지역측지계		세계측지계		소재지
	X(m)	Y(m)	X(m)	Y(m)	
10757	450919.77	198649.11	551225.62	198719.98	남산동1가 6-24
10758	450925.28	198654.31	551231.13	198725.18	충무로2가 110-5
10759	450882.15	198647.21	551188.00	198718.08	남산동1가 6-24
10760	450820.15	198612.26	551126.00	198683.14	남산동1가 7-8
10761	450790.77	198608.54	551096.62	198679.42	남산동2가 32-19
10762	450755.27	198583.84	551061.12	198654.72	남산동1가 13-2
10763	450694.29	198567.38	551000.14	198638.26	남산동2가 44
10764	450697.22	198557.16	551003.07	198628.04	남산동1가 15-3
10765	450692.94	198532.44	550998.79	198603.33	남산동1가 16-30
10766	450698.65	198514.56	551004.50	198585.45	남산동1가 16-4
10767	450694.79	198501.08	551000.64	198571.97	회현동2가 32-10
10768	450727.73	198506.10	551033.58	198576.99	남산동1가 16-4
10769	450838.34	198488.75	551144.19	198559.64	회현동3가 14-2
10770	450672.00	198506.37	550977.85	198577.26	회현동2가 42-8
10771	450660.07	198491.20	550965.92	198562.09	회현동2가 42-8
10772	450622.40	198491.21	550928.25	198562.10	회현동2가 42-8
10773	450623.01	198513.99	550928.86	198584.87	회현동2가 42-8
10774	450624.11	198522.11	550929.96	198592.99	회현동2가 42-8
10775	450592.11	198533.29	550897.96	198604.17	회현동1가 144-72

지적도근접 번호	지역측지계		세계측지계		소재지
	X(m)	Y(m)	X(m)	Y(m)	
10776	450556,50	198538,58	550862,35	198609,46	회현동1가 산1-35
10777	450527,11	198526,88	550832,96	198597,77	회현동1가 산1-35
10778	450484,88	198545,87	550790,73	198616,75	회현동1가 산1-39
10779	450535,38	198553,84	550841,23	198624,72	회현동1가 산1-38
10780	450573,38	198568,13	550879,23	198639,01	남산동2가 50-12
10781	450625,28	198558,83	550931,13	198629,71	남산동1가 21-1
10782	450654,06	198556,18	550959,91	198627,06	남산동1가 20-3
10783	450692,31	198593,66	550998,16	198664,54	남산동2가 42-3
10784	450656,59	198599,42	550962,44	198670,30	남산동2가 46-3
10785	450650,48	198610,33	550956,33	198681,21	남산동2가 46-3
10786	450644,40	198629,21	550950,25	198700,09	남산동2가 46-3
10787	450639,85	198637,85	550945,70	198708,73	예장동 8-161
10788	450694,08	198642,40	550999,93	198713,28	남산동2가 42-3
10789	450709,61	198664,50	551015,46	198735,37	남산동2가 27-2
10790	450730,59	198683,74	551036,44	198754,61	남산동2가 27-1
10791	450741,38	198695,29	551047,23	198766,16	남산동2가 18-1
10792	450777,31	198678,31	551083,16	198749,18	남산동2가 30-3
10793	450794,48	198678,32	551100,33	198749,19	남산동2가 15-10
기준원점명	중부원점				
설치일	2022.12.7.				
표지의 재질	황동				
측량성과 보관장소	서울특별시 중구청 토지관리과				
비고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접)				

※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2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2-126호

## 2023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건 명 : 2023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2. 결정항목
  - 가. 차 량
    - ① 용어정의 ② 용어해설 ③ 적용요령 ④ 산출예시 ⑤ 기준가격표
  - 나. 기계장비
    - ① 용어정의 ② 용어해설 ③ 종류 ④ 연도별 잔가율표 ⑤ 적용요령 ⑥ 산출예시 ⑦ 기준가격표
  - 다. 선 박
    - ① 용어정의 ② 내용연수 ③ 적용요령 및 가감산 특례 ④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⑤ 기준가격표 ⑥ 잔가율
  - 라. 항 공 기
    - ① 용어정의 ② 내용연수 및 잔가율 ③ 적용요령 ④ 기준가격표 ⑤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 마. 시 설
    - ① 용어정의 ② 종류 ③ 내용연수 및 감가율 ④ 기준가격표 ⑤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⑥ 적용요령 ⑦ 개수 시가표준액
  - 바. 시설물
    - ① 용어정의 ② 종류 ③ 내용연수 및 감가율 ④ 기준가격표 ⑤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 사. 회 원 권
    - ① 용어정의 ② 종류 ③ 기준가격표 ④ 적용요령
  - 아. 입 목
    - ① 용어정의 ② 용어해설 ③ 종류 ④ 시가조사방법 ⑤ 기준가격표 ⑥ 산출방법
  - 사. 어업권
    - ① 용어정의 ② 종류 ③ 기준가격표 ④ 적용요령
  - 아. 지하자원
    - ① 용어정의 ② 종류 ③ 용어해설 ④ 적용요령 ⑤ 기준가격표
3. 세부결정사항
 

중구 세무1과 및 세무2과에 비치하고 있는 2023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4.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2-129호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구 건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효력발생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 로 명 부여기준
서울특별시 중구 목정동 25-1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50길 43	2022. 12. 28	신청에 따라 퇴계로50길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 6. 30	퇴계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3)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http://www.junggu.seoul.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 도로명주소 변경

-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12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2-130호

###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구 도로명주소 폐지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50길 43	2022.12.28	건물 철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3)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http://www.junggu.seoul.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도로명주소가 새로이 부여됩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2-131호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05호(2020.7.16.)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중구청 고시 제2022-45호(2022.6.8.)로 사업계획승인 고시된 황학동 1756번지 외 47필지 상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주택법」 제19조에 따라 이를 고시함.

2022년 12월 2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사업의 명칭 : 중구 황학동 1756번지 일대 주상복합시설 신축공사
2. 사업주체의 성명 및 주소

사업주체			대표자	주소		
변경전	변경후	비고		변경전	변경후	비고
황학동청계 지역주택조합	-	변경 없음	김지현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12, 혼정빌딩 5층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12, 혼정빌딩 4층	주소변경
주식회사 한라	에이치엘디앤아이 한라 주식회사	(명칭) 변경	이석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89, 시그마타워 9층(신천동)	-	변경없음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1756 외 47필지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1756 외 47필지	변경없음
구역면적	6,256.00㎡	6,256.00㎡	변경없음
대지면적	6,068.60㎡	6,068.60㎡	변경없음
연 면 적	58,454.008㎡	<b>58,507.187㎡</b>	변경
건축면적	3,401.124㎡	<b>3,418.293㎡</b>	변경
용 적 률	608.58%	<b>608.77%</b>	변경
건 폐 율	56.04%	<b>56.33%</b>	변경
용 도	공동주택(40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업무시설	공동주택(40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업무시설	변경없음
규 모	주건축물 7개동(공동주택 4개동), 지하6층/지상20층,	주건축물 7개동(공동주택 4개동), 지하6층/지상20층,	변경없음

※ 사업계획 변경 사유 : 입주인 환경 개선 및 특화계획 반영

- 1층 외벽 일부 커튼월 적용, 1층~4층 저층부 창호 조정, 지붕층 난간 부분변경, 지붕층 조정계획 변경
- 1층 층고(101동), 5층 층고(101,102,104동) 변경, 101동 엘리베이터 크기 확대, 관리동 내부평면 변경

### 4. 사업시행기간

변경전	변경후	비고
2022.12.31. ~ 2025.12.31.	2023.1.31. ~ 2026.6.30.	

5. 사업계획승인일 : 2022. 5. 31.
6. 주택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 가.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등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지정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붙임〕 참조)
7. 기타사항
  - 가. 결정도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 도심재생과(☎3396-5722)에 비치



[붙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I. 중구 황학동 1756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	중구 황학동 2085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구 황학동 1756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구 황학동 2085번지 일원	중구 황학동 1756번지 일원	6,256.0	-	

■ 결정(변경)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 구역명 변경 : 중구 황학동 2085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 중구 황학동 1756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 위치 변경 : 중구 황학동 2085번지 일원 → 중구 황학동 1756번지 일원	· 대표 지번 변경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없음
-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교통시설 결정조서 : 변경 없음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규모(㎡)			관리청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①	공공청사	중구 황학동 2085번지	중구 황학동 1756번지	대지지분(㎡)	243.0	-	243.36	서울시	사업시행자가 시설 설치 후 서울시에 기부채납
					층	4	-	4		
					연면적(㎡)	2,340.40	5.86(증)	2,346.26		

주) 입체적 결정하는 공공청사 연면적은 전용·공용·부대시설을 합한 면적이며, 추후 협의 결과 반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공청사	· 공공청사 면적 변경 - 연면적 : 2,340.4㎡ → 2,346.26㎡, 증) 5.86㎡	· 상가 1개층 외벽 커튼월 변경에 따른 공공청사 대지지분 및 환산부지 면적 변경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없음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없음
  - 건축물의 개발밀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없음
  -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없음
  -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없음
-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없음
  -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없음
  - 공공시설 등 조성 및 제공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 순부담률 : 14.7% (917.8㎡) - 도로 : 187.4㎡ - 공공청사(환산부지+대지지분) : 730.4㎡	
변경	· 순부담률 : 14.7% (919.34㎡) - 도로 : 187.4㎡ - 공공청사(환산부지+대지지분) : 73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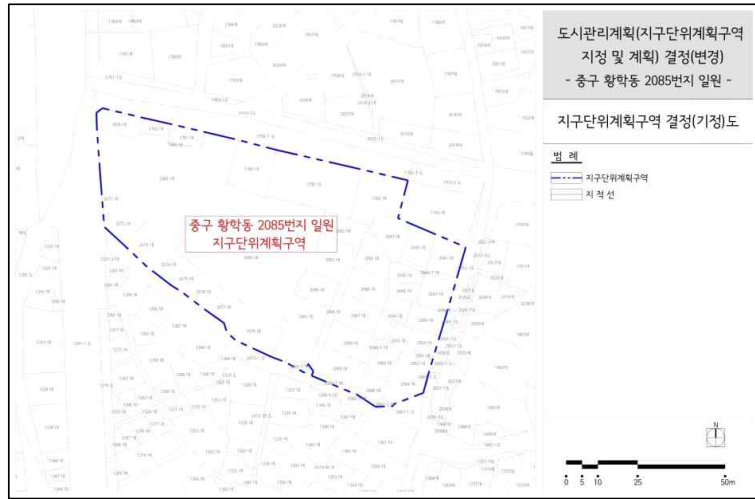
■ 결정(변경)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공청사 면적 변경 - 환산부지+대지지분 : 730.4㎡ → 731.94㎡, 증) 1.54㎡ - 환산부지면적 : 487.4㎡ → 488.58㎡, 증) 1.18㎡ - 대지지분 : 243.0㎡ → 243.36㎡, 증) 0.36㎡	· 상가 1개층 외벽 커튼월 변경에 따른 공공청사 대지지분 및 환산부지 면적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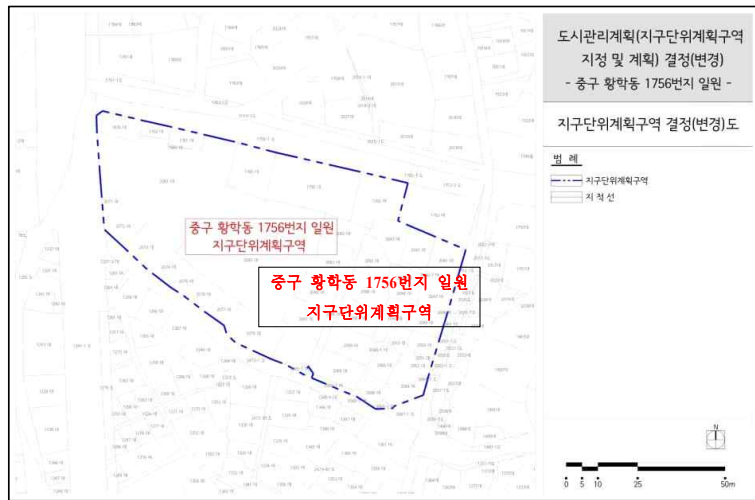
④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 : 변경 없음

II. 관계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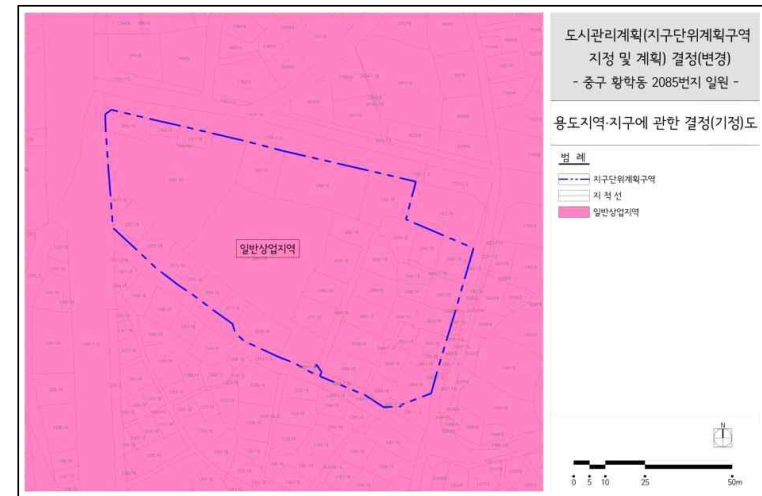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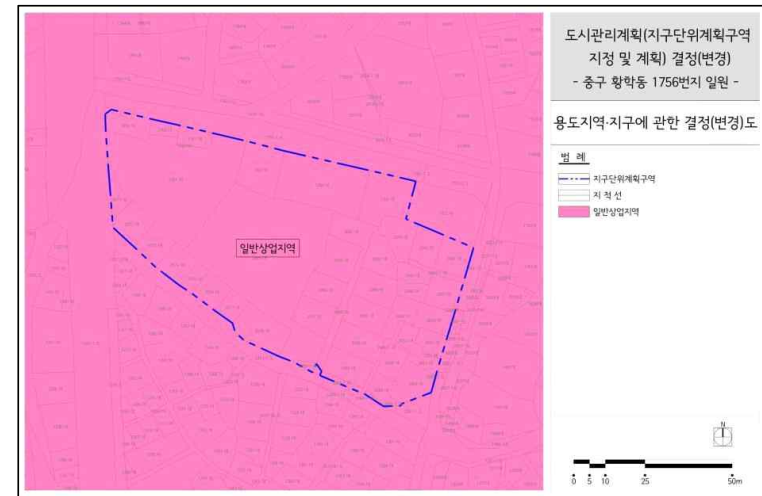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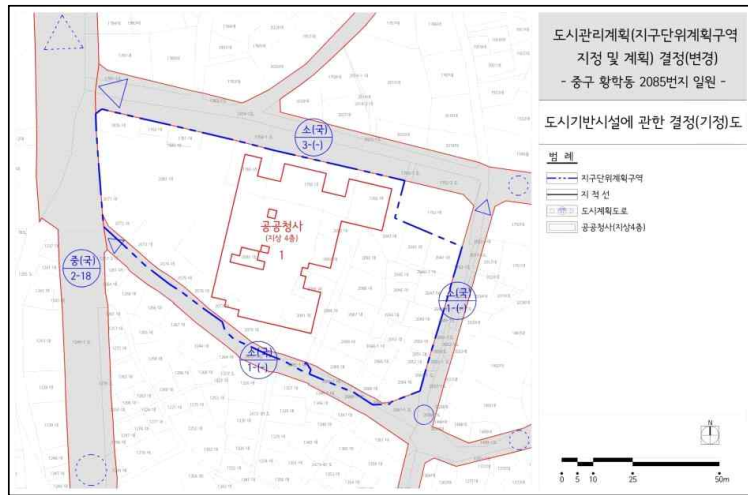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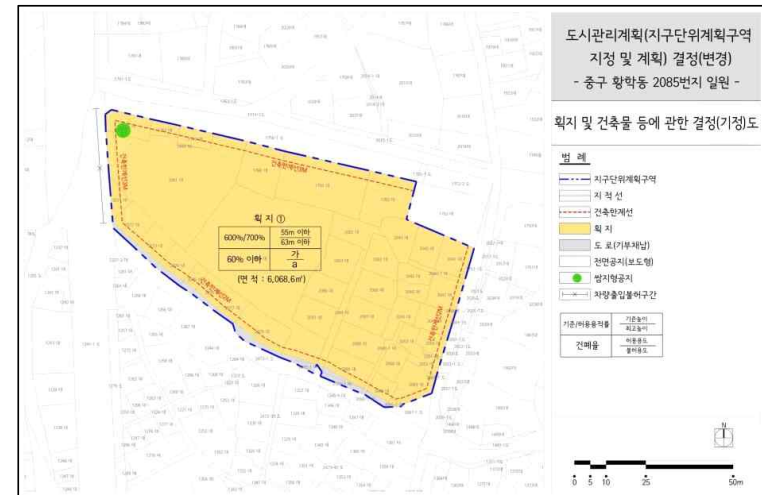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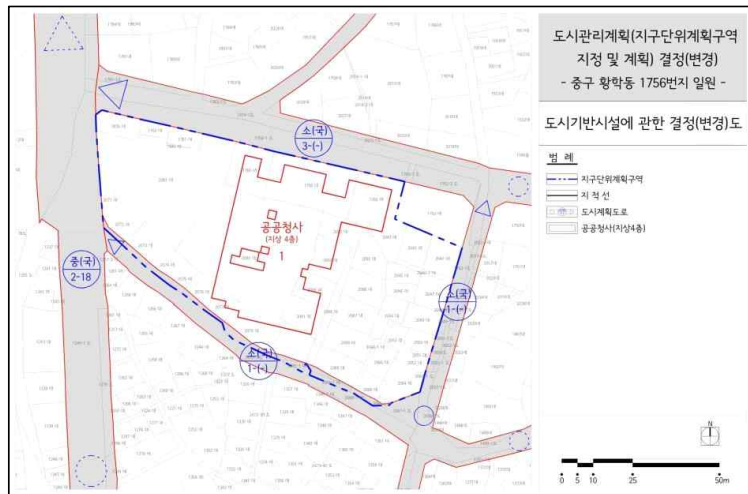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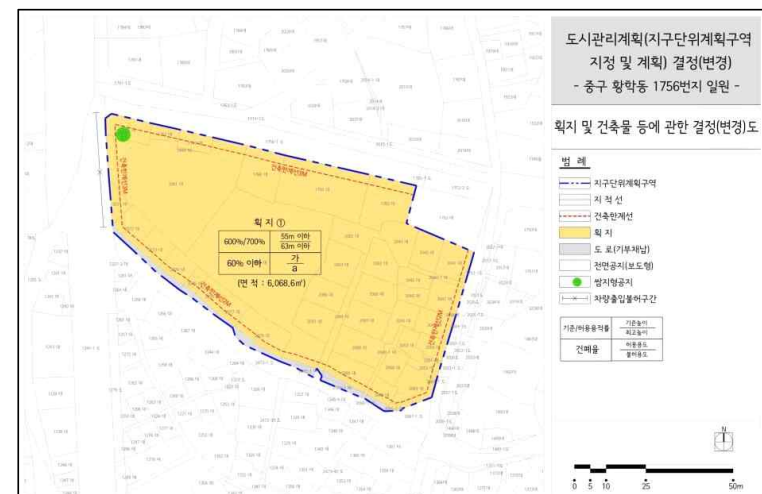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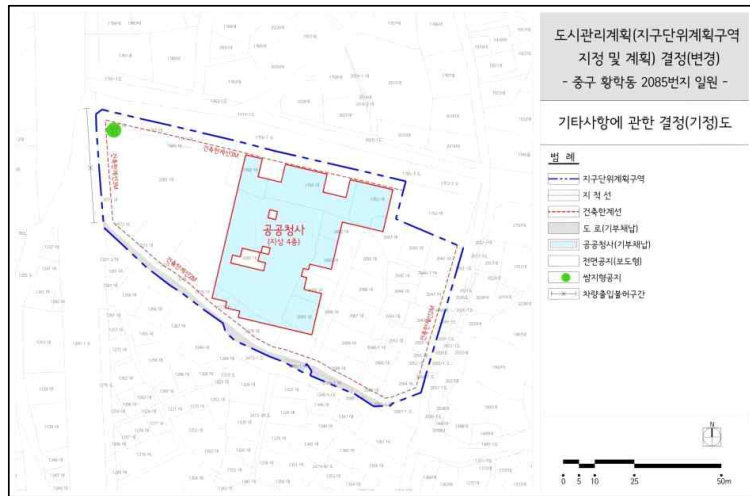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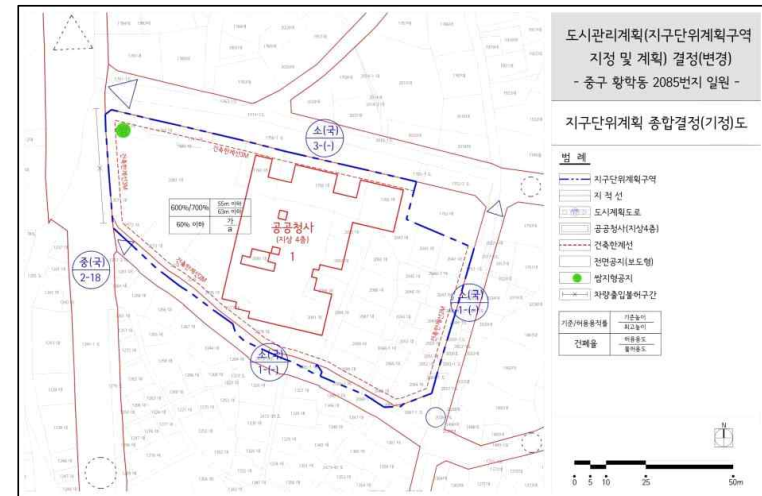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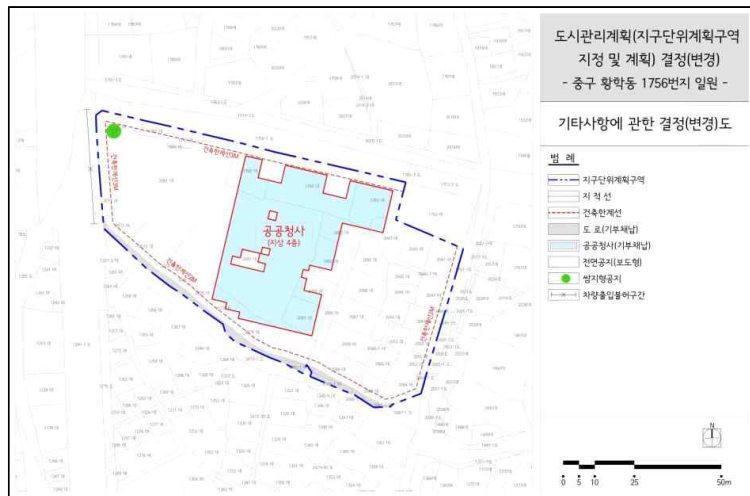
■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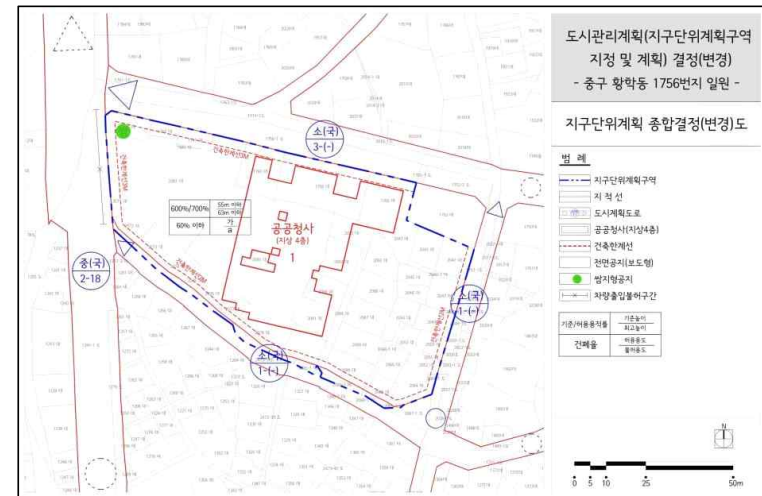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기정)도



■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도



■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변경)도



■ ※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으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2-132호

### 서울역-서대문1·2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건설부고시 제368호(1973.09.06.)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429호(1978.12.29.), 서울특별시 공고 제293호(1985.05.16.)로 사업완료(1지구),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73호(2021.02.04.)로 정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2-72호(2022.07.27.)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서울역-서대문1·2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서울역-서대문1·2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7번지 일대
  - 면 적 : 17,274.0㎡ (대지 16,316.6㎡, 정비기반시설 957.4㎡)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삼성생명보험(주) 대표이사 전영목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22. 12. 28.
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	용적률 (%)	층 수 (층)	높이 (m)	용 도
16,316.6	9,772.01 (저층부 11,410.07)	59.89 (저층부 69.93)	213,967.66	849.33	지상19 /지하7	90.0	업무시설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1) 분양대상자 및 분양면적

분양대상자		분양예정의 대지 및 건물			비 고
성 명	주 소	토지(㎡)	건물(㎡)	용도	
삼성생명보험(주)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10,379.92	136,117.09	업무시설	

2) 체비지 시설 : 토지 5,936.68㎡, 건물 77,850.57㎡

3) 보류지 시설 : 없음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신 설					용도폐지				
종류	명칭	규모(㎡)	설치비용 (천원)	관리청	종류	명칭	규모 (㎡)	구공 유무 (㎡)	무상 양여 (㎡)
도로	중로1-201	116.0	13,499,340	서울특별시중구	-	-	-	-	-
도로	중로2-232	841.4			-	-	-	-	-
계		957.4	시행자부담		-	-	-	-	-

라.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부터 3개월이내

6. 기타 관계도서는 생략(중구청 도심재생과에 비치 ☎02-3396-5772)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92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보험료납부의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대한 법률」제8조 (부정이익 등의 환수)에 의거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수취거절)로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1. 건 명 : 퇴직정산보험료(건강 및 고용보험료) 환수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2. 근거법규 :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공시송달), 「지방세기본법」제33조
- 3. 공시송달 대상 : 갑\*호
- 4. 공고기간 : 2022. 12. 27. ~ 2023.1. 9.(14일)
- 5.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중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 6. 송달내용
  - 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지원업무 근로계약(종료) 관련하여 발생한 “퇴직정산보험료(건강 및 고용보험료) 초과 지급분(본인부담금)”을 납부 고지하니,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기한 내 미납부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문의처 : 중구보건소 감염병관리과 감염병대응팀 ☎ 02-3396-4856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931호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4조 ~ 제16조에 따라 「서울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규 모(㎡)	아동현황 (정원)	개 원	비 고
신당5동 어린이집	중구 퇴계로88가길 8-10	858,22㎡ (지하1층/지상4층)	170명	82,11.8.	시간연장 영아보육

2. 위탁 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

3. 신청 자격

- 가. 법인 또는 단체
  - ▶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 정관의 목적사업에 보육 또는 유아교육 등 관련사업이 명시되어 있거나 이사회에서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함

\* 원장 내정자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는 자

4. 신청 제외 대상

- 가.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정사유에 해당하는 자
- 나. 최근 5년 이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다. 최근 5년 이내 행정처분(시정명령 제외)을 받은 경력이 있거나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중도에 포기한 자
- 라. 운영주체의 지도·감독 시 공신력,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자
- 마. 주된 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5. 신청서 접수**

- 가. 공고기간 : 2022. 12. 27.(화) ~ 2023. 1. 16.(월)
- 나. 접수기간 : 2023. 1. 6.(금) ~ 2023. 1. 16.(월) 18:00까지
- 다. 접수장소 : 중구청 본관5층 여성보육과(가족정책과)
- 라.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직접 방문접수 (월~금, 09:00~18:00)  
(※토요일·공휴일 및 우편, 택배, 인터넷 접수는 불가함)
- 마. 제출서류

구분	서류항목	운영체		비고
		법인	단체	
개별사항	■ 법인의 정관, 등기부 등본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		
	■ 비영리단체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 위탁 신청서</li> <li>■ 이력서, 자기소개서(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li> <li>■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li> <li>■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li> <li>-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li> <li>-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합산)</li> </ul> </li> <li>■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li> <li>■ 자부담 송낙서</li> <li>■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 및 예산서</li> <li>■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평가 등)</li> </ul>			※첨부의 제출서식 의거작성

- 바. 제출부수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16부 (원본 1부, 사본 15부), 요약서 (16부, 3~5페이지 분량)
  - ※ 쪽수표시 요망 및 자산현황 관련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는 원본에만 첨부
  - 심사자료는 양면 인쇄, 쪽 표시, 목차 라벨 표시, 반드시 제본
  - 면접심사 발표용 PPT를 2023.1.20.(금) 18시까지 e-mail 제출(lym314@junggu.seoul.kr)

**6. 사업설명회 : 생략**

※ 구청방문시 시설개요, 위탁시설 업무, 위탁절차, 자료작성 및 심의기준 등 설명

**7. 위탁조건**

- 가.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어야 함

- 나.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장애아·시간연장·다문화아동) 중 2개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각 시설별 보육유형에 의한 취약보육은 반드시 실시하고 구에서 권장하는 취약보육에 대해 우선 실시하여야 함
- 다.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
- 라. 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및 관계자와 친인척 원장 임용금지 및 대표자 관계자원장의 친인척 종사자 임용 금지하며 개인의 경우 원장의 친인척 종사자 임용 금지함
  - ※ 친인척 : 직계존비속,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마. 영유아 보육관련 법령,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지침, 중구 영유아보육조례, 위·수탁 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 제22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규정에 의거 위탁 취소
- 바. 위탁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추후 『어린이집 사무 위·수탁계약서』로 별도 계약 체결

**8. 선정방법 및 심사결과 발표**

- 가. 선정방법 : 중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표에 의거 서면 및 면접심사 후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 (※ 심사일은 별도 통지)
- 나. 심사항목 : 5개 분야
  - 어린이집 운영계획, 어린이집 원장(내정자)의 전문성, 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 운영체의 책무성 및 공신력, 운영체의 재정능력
  - ※ 「2022년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항목」참고
- 다. 면접방법 : 법인·단체 대표자(당일 위임자)와 원장내정자가 함께 출석하여 5분 이내 운영계획 발표 및 원장의 전문성 면접(PPT발표)후 질의응답 순으로 실시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라. 결과발표 : 중구 홈페이지 공개 및 선정 수탁자에게 개별통지

**9. 유의사항**

-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후 열람·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 나. 접수된 서류 중 중요서류 미비 및 서류의 내용이 관계기관 확인시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심의 제외,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 취소
- 다. 위탁 운영조건 등 관련사항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라. 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 마. 법인·단체 대표자(당일 위임자)와 원장내정자가 함께 출석하여 5분 이내 운영계획 발표 및 원장의 전문성 면접 실시함.
- 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에 위탁체 선정을 무효로 함
- 사. 신청자가 단수일 경우 심의를 실시하지 않고 1회에 한하여 재공고 함
- 아. 위탁신청서류 제출 시 요약서(3~5페이지 분량)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여성보육과(가족정책과)(☎02-3396-5412)로 문의